근린생활시설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 약정서(안)

근린생활시설 소유주(이하 “소유주”라 한다)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린생활시설 담장허물기 주차장 (야간)공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소유주”가 근린생활시설 담장허물기 주차장(서대문구 ○○동 ○○-○○)을 (야간)공유 하고 “이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소유주”는 약정기간(5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근린생활시설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공유하여야 하며, 약정기간(5년) 이내에 설치된 주차장의 기능 미유지 또는 주민과의 공유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공사비는 즉시 반환한다.

②약정기간 이후 “소유주”의 사유로 인해 주차장 공유를 중단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를 “이용자”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소유주”가 제공한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공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소유주”가 “이용자”에게 개방한 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 · 배정 · 요금징수 · 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주차장의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시간) 담장허물기 주차장 (야간)공유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이용시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제, 야간제 운영시간에 준함

제4조 (이용자 주차요금) 야간에 공유하는 근린생활시설 담장허물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기준에 준하여 월 ○만원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수입금 귀속)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는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받아 주간에 주차장 이용 혜택을 제공 받으므로 주차장 공유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관리·지원하는 "구청장"의 소유로 한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소유주"가 제공한 담장허물기 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이용자"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구청장"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청장"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 관리자가 없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이용자"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이용자"가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소유주"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용자"의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 · 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소유주”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소유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소유주”와 “이용자”와 “구청장”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 .

근린생활시설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서대문구청장 (인)